

투자설명서 등 변경안내

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 포함) 등 일부 변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.

□ **효력발생일:** 2017년 7월 27일(수)

□ **대상 펀드**

1. AB 글로벌 고수익 증권투자신탁 (채권-재간접형)
2. AB 미국 그로스 증권투자신탁 (주식-재간접형)
3. AB 셀렉트 미국 증권투자신탁 (주식-재간접형)
4. AB 글로벌 로우볼 증권투자신탁 (주식-재간접형)
5. AB 글로벌 플러스 안정수익 증권투자신탁 (채권-재간접형)

□ **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**

항목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요약정보 1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※ 주석사항	종류 추가	주 3) 상기 종류 수익증권 이외에 종류 C-w, 종류 I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	주 3) 상기 종류 수익증권 이외에 종류 C-w, 종류 I, 종류 Ce-P, 종류 Ce-P2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제 1 부.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종류 추가		종류 Ce-P, Ce-P2 추가
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종류 추가		종류 Ce-P, Ce-P2 추가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갱신		업데이트 (종류 Ce-P, Ce-P2 추가)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종류 추가		(종류 Ce-P, Ce-P2 추가) - 종류 Ce-P: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로서 온라인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 전용 수익증권 - 종류 Ce-P2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가입자로서 온라인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 전용 수익증권

□ **집합투자규약 변경대비표**

항목	정정사유	정정 내용
집합투자규약 전반	종류 추가	(종류 Ce-P, Ce-P2 추가) - 종류 Ce-P 수익증권: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로서 온라인을 통해 가입하는 투자자 - 종류 Ce-P2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로서 온라인을 통해 가입하는 투자자

※ 상기 정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